

(재)김해시 복지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14. 01. 15 제03호

일부개정 2016. 03. 15 제4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이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5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이사회 의 소집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 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3장 의 안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복지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 하는 사항
11.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8조(부의절차)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하는 안건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절차

제9조(회의통지) ①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은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 일정을 검토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개최 통지는 제출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제출안건은 재단의 사무국장 또는 사업별 소관 팀장이 설명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연기 및 속행) ①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결의 [별지 제3호서식] 로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복지재단이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의결서 작성) 사무국장은 이사회 종료 후 제출안건에 대한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 [별지 제5호서식] 을 작성하여 의장 및 참석이사 전원과,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재단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4. 1. 5, 제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45호 2016.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 . . 제 차 (정기·임시회)	

안 건 명

제안자	
제안년월일	20 . . .
(재)김해시복지재단	

안건명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신 :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제 회(정기, 임시)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
2. 장 소 :
3. 의 안 :

의안번호	의안 제목	소관부서

4. 내 용 : 별 첨

20 년 월 일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이사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정기·임시) 이사회 서면결의서

안건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서면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이사장 (인)

성 명 (날 인)	찬 성	반 대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부의안건 : 붙임참조

[별지 제4호서식]

의 결 서

의 결 자	직위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성명										
	날인										
의결일자			의 결 장 소						감 사		
20 . . .									(인)		
									(인)		
의안번호	제 목			의 결 내 용						비 고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회(정기·임시) 이사회 의사록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일 시		기록자	(인)
장 소			
재적이사			
출석이사			
참 여 자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건 명	의결내용	소관부서

회의내용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년 월 일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감 사 (인)